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289, 팩스 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51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0조의3 제1항에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근거 규정 마련에 따라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신청 절차를 신설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신청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제4항 및 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장애인정책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coreal29@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3289, 팩스 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75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진단 대상시설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bat082@korea.kr
- 팩스 : 044-201-69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 201-6901, 팩스 (044) 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76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악취배출시설 현행화를 위하여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분류체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